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2월 3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실증설비 설치 등에 따른 하수도점용료를 서울시 자체 방침으로 면제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물산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하수도점용료 감면기준 및 산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